

의안번호	2218031
의 퇴 인	서삼석 의원
회 답 일	2026. 8. 6.
추계번호	26B1962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(산악구조대의 운영)	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·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<u>운영하여야 한다.</u>(제1항) ※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편성·운영 의무화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8조(산악구조대의 운영)	• 제3호 –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숲길관리청¹⁾으로 하여금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·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⁾

1)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

2) 제28조(산악구조대의 운영) ① 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·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2조(산악구조대의 운영 등)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.

1. 산림항공구조대: 항공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,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, 산림항공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.
2. 산행안전지원대: 산림항공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방·응급처치·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, 숲길관리청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.
3. 민간산악구조대: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숲길 이용자의 조난·실종 및 추락 등 산악사고 예방, 산악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·구급 활동 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하며,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.

[표 1] 산악구조대별 임무

	편성·운영 기관	임무
산림항공구조대	산림항공본부	항공기를 이용한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
산행안전지원대	숲길관리청 (지방청, 지자체)	산림항공구조대 활동지원, 예방·응급처치·구급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
민간산악구조대	(사)대한산악구조협회	산림항공구조대, 산행안전지원대 활동지원, 산악사고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

자료: 산림청

- 개정안은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산림청에 따르면 지방산림청의 경우 산림항공본부에서 보유한 헬기, 장비 및 공중진화대원을 활용·구성하여 산악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,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-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산악구조대 편성·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산악구조대 편성 규모에 따른 필요 인력·장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